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해당하는 경우 등록번호 기재)		등록번호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상병명		③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 입원	[] 외래	
⑤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⑥ 요양비처분 발행일 전자처방전 등록번호	. . .	⑦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청구기간	~		
⑧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준요양기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모델명	관리번호			
⑨ 진료받은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소) (휴대전화)	
⑩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계약금액(월 대여금액)	[] 혼합형 [] 압력형 [] 볼륨형		원	구분	승인번호	작성·거래일	합계금액
⑪ 기본소모품(공통)	[] 1 세트 [] 2 세트		원	⑬ 전자세금 계산서			
⑫ 소모품 구입 금액(판매금액) (②, ④중 하나선택)	선택소모 품 ②	[] 일반 일체형 커넥터	[] 1 개 [] 2 개		원	⑭ 현금영수증	
		[] 일반·실리콘 튜브 연결형 커넥터	[] 1 세트 [] 2 세트	원			
	선택소모 품 ④	[] 코마스크(Nasal, Pillow Mask)	[] 젤	원			
		[] 코입마스크(Facial Mask)	[] 실리콘	원			
⑮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준요양기관 계좌		[]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의
의
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5.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 1부.(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②③⑤ 상병명(주된 상병)과 상병코드를 및 요양기관 명칭과 요양기관 기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④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합니다.
- ⑥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⑦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의 청구기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요양비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달에 이어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예시: 2021년 2월 21일부터 진료인 경우 → 1차 청구: 2021. 2. 21. ~ 2021. 2. 28., 2차 청구: 2021. 3. 1. ~ 2021. 3. 31., ..., 마지막 청구 시: 2021. 8. 1. ~ 2021. 8. 20.>
- ⑧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 ⑨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 ⑩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의 환기타입에 “√” 표시하고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대여금액은 실제 기기 월 대여금액을 적되,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⑪ 기본소모품은 튜브, 필터 및 가슴기물통으로 구성됩니다. 1세트는 튜브 1개, 필터 4개, 가슴기물통 1개이며 2세트는 튜브 2개, 필터 4개, 가슴기물통 1개입니다.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하고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구입한 소모품의 실제 구입금액을 적어야 하며,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⑫ 선택소모품 ㉦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를 선택한 경우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의 종류(일반일체형, 일반·실리콘 튜브 연결형)와 수량을 선택하여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커넥터는 월 최대 2세트까지 선택가능하며 교차선택 가능합니다. ㉨를 선택한 경우 해당 종류와 재질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습니다. 기관절개술 또는 기관봉합술로 선택소모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⑬ · ⑭ 승인번호란, 작성·거래일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⑮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⑯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